

평택 뉴비전 엘크루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공급위치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34번지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7층 15개동 총1,396세대
- 대지면적 : 72,045,00㎡
- 공급대상 : 총1,396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일정 계획(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2019. 02. 28(목)	일간신문 및 평택 뉴비전 엘크루 홈페이지 (http://www.new.elcruapt.com)
• 분양상담실 개관	2019. 02. 28(목)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1-5번지 (TEL: 031-658-1000)
• 접수일자	2019. 03. 05(화)	APT2you 인터넷청약
• 당첨자발표	2019. 03. 13(수)	APT2you 홈페이지
• 동호수 발표	2019. 03. 13(수)	APT2you 홈페이지

※ 위 일정은 업무추진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 대상세대수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85㎡이하 138세대)

구분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군인		다문화가족		합계	
			서울		인천		경기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64	3	3	2	2	2	2	2	2	3	3	1	1	1	1	14	14
74	13	13	9	9	9	9	11	11	14	14	8	8	8	8	75	75
84A	5	5	3	3	3	3	4	4	5	5	3	3	3	3	27	27
84B	2	2	2	2	2	2	2	2	2	2	1	1	1	1	11	11
84C	2	2	2	2	2	2	2	2	2	2	1	1	1	1	11	11
합계	25	25	18	18	18	18	23	23	26	26	14	14	14	14	138	138

■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 요건 / 자격 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공급 1회 제한 및 예외사항 - 특별공급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공급할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제외됨 가. 사업주체가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36조제1호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나. 사업주체가 제35조에서 제46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함)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다. 사업주체가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조에 따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 기관추천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청약 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은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평택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신청 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호에 해당 하는 자 중 각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별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추천기관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		경기남부보훈지청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평택시청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다문화가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8호		여성가족부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예비자 포함)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APT2you홈페이지에서 특별공급 신청하여야 함[신청시 주택형 변경 불가,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			
	※ 2018.07.06.(금)이후 모집공고 승인신청분 부터 특별공급 청약접수는 APT2you 홈페이지에서 접수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원이 일반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취소되고 일반공급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어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 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제5항에 따라 당첨자 중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에게 1층의 주택 중 무작위로 동/호수를 우선 배정 후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재선정.			
유의 사항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예비 포함)은 현행과 동일하게 사업주체가 수행하고 동·호수 배정은 결재원에서 전산추첨('18. 07. 19 이후 결재원 수행)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무작위 추첨 시 공정하게 추첨 수행 (추첨 현황 녹화 등)			

• 당첨자 발표는 일반공급 발표일에 동시 발표 • APT2you 홈페이지에서 접수(서류제출 없음). 다만,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자는 <u>건본주택에서 신청(10:00~14:00, 현장 접수 시에는 자격증명 서류 제출)</u> • 동일주택에 한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당첨 시 특별 공급을 당첨으로 간주 • 동일세대에서 중복청약으로 동시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동일주택에 동일인이 다자녀, 노부모 등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가구 수 및 대상자(예비자 포함)를 확정하고 특별공급 접수일 전에 동 대상자(예비자 포함)를 결재원에 통지 • 예비자 추천 여부는 기관이 결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음(타 유형 특공 미달 시 예비자가 당첨될 수도 있음) • 기관추천 대상자도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하여야 당첨자로 확정 • 기관추천 대상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대는 타 유형의 특공 낙첨자 (기관 예비자 포함)에게 공급 • 특공 · 일반 동시에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 - 특공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특공 배정 시 일반예비 지위는 무효 - 특공 예비를 포기하고 일반예비 선택 불가 - 다만, 특공 예비가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 기회가 상실된 경우 일반 예비순번 지위 인정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9.02.28.(목)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건본주택 및 팜플렛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관에서는 <u>적격대상자(예비자 포함) 명단을 2019.02.27(수)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u> 다. • 인터넷 청약관련 문의는 금융결제원 [02] 531 - 1772 ~ 6]으로 문의 바랍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2.28)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신청서 등	● 신청일에 신청장소(분양상담실)에 비치
청약통장가입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 (중소기업근로자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제3자 대리접수시	위임장(건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청약자 인감증명서(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대리신청자 신분증

■ 유의사항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미신청·미계약 등 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신청형태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팝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new.elcruapt.com>)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2.28) 현재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031-658-1000

■모델하우스 :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1-5번지

비전이 보이는 **평택 뉴비전 엘크루 PREMIUM4**

031) 658-1000



1번 국도와 38번 국도가 만나는
사통팔달 계속 교통망



법정 2배 규모의 어린이집(예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국공립 전환예정)



4Bay 판상형 구조, 넓은 동간거리 등
살기 좋은 와이드 특화설계



스타필드 안성(예정)이 인접한
스타필드 물세권의 미래가치



현장: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34번지 일원 / **건물주책**: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1-5
64㎡/74㎡/84㎡ 총 1,396세대

031) 658-1000

※ 본 홍보물의 설계 관련사원은 인 · 허가 과정에서 미려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개발계획은 관계기관의 시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양사에 유관합니다.